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년 8월 21일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8월 31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9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02. 9. 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청소위생과장 송기성)

가. 제안이유

- 2001년 12월중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 개선,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,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및 품목별 수수료가 세분화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쓰레기 종량제 봉투종류 재질 개선
 - 쓰레기 종량제 봉투 두께를 0.005mm 두껍게 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(안 10조)
 - 종량제 규격봉투 10l, 20l 용량은 얇은 녹색 등을 넣어 사생활을 보호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10조)
 -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개정(안 제10조 “별표7”)
 -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 및 장바구니를 대여토록 신설(안 제14조)
 - 환경미화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(안 제18조 “별표3”)
 - 생활폐기물 적환장 폐지(안 제22조)
 - 생활폐기물 보고·검사 등 폐지(안 제25조)
 - 담배꽂초 및 휴지 등 단순한 투기 포상금은 부과금액의 10% 이내로 정한다.(안제29조)
 -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동사무소에만 하도록 된 규정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대행업체에도 할 수 있도록 변경(안 제23조 제1항 제2호)
 -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위탁 대행업체 방문 시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도 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23조 제1항 제2호)
 -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의 품목을 38종에서 90종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 책정(별표1)
-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근수)

-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중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 개선,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,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및 품목별 수수료가 세분화되어 관련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
- 안 제15조에서
 -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 토지·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

 - 또한 자치단체장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결유지 하는데 기존 「계도에 노력해야 한다.」에서 「계도하여야 한다」로 더욱 강화하였으며

- 안 제10조에서
 - 쓰레기 종량제 봉투 두께를 현행 0.025mm에서 0.030mm로 0.005mm두께로 하여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를 강화하여 잘 터지거나 이종으로 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

 -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다양화하여 봉투가 투명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될 단점을 보완하고 쓰레기의 매립·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즉, 주민부담을 기준으로 봉투가격을 책정하여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,

- 안 제14조에서
 - 주민편익차원에서 구매자가 원할 때 봉투의 낱장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타구 전출 시 같은 용량으로 1:1교환과 타 시·도 전출 시 잔량을 공급가격으로 환불해주며

 - 1회용 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나 장바구니를 대여토록 신설하였으며

- 안 제18조에서
 - 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,

- 안 제22조 일반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키 위해 쓰레기 임시보관 장소인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폐지 하고

- 안 제23조에서
 -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동사무소에만 신고하는 현행 방식 외에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후 배출하거나 지정 수거업체에 전화로 연락 배출하는 방법을 추가하고

 - 대형폐기물 납부 방법을 위탁대행업체 방문 시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

 -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의 품목을 기존38종에서 90종으로 세분화하여 구분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 가격 정당화를 이룩하여 최대한 배출 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며

- 안제29조에서 담배꽂초 및 휴지등 단순한 투기 포상금은 신고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기존 40%에서

10%로 축소하여 상습적인 불법투기에 역점을 두어 신고 포상금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민 불편사항 등 그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보겠으며
- 특히 종량제 봉투개선,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, 대형폐기물 종류 및 품목별 수수료 세분화 종량제 봉투판매 개선 및 납부방법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
- 또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자치단체장은 물론 토지·건물의 관리자, 소유자, 점유자 등 모든 주민이 청결유지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여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불법투기를 억제하는데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,
- 생활폐기물 적환장 폐지, 담배꽂초 및 휴지 등 단순한 투기 포상금은 부과금액의 10% 이내로 조정할 것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.
-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7. 기타사항 : 없음
